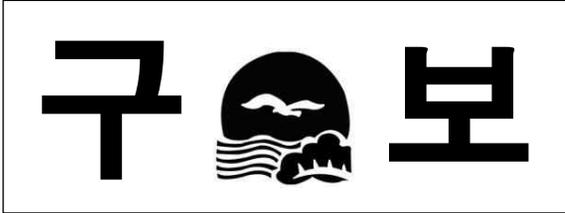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413 호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0호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1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2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3호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4호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29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5호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 32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6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35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7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41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88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 44

### 예 규

- 인천광역시중구예규 제108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예규) ..... 5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고 시**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56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62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64
-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 65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52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66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52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68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530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항 공고) ..... 70

**조      례**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및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나.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제3조 ~ 제9조)
-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제10조 ~ 제13조)
- 라. 체육시설 사용자의 의무 등(제14조 ~ 제16조)
- 마.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등(제17조 ~ 제2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0호

###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는 사람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 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허가의 대가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성명·사용목적·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같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은 타 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 발생이 예상될 때 또는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조간: 05시부터 08시까지
2. 주간: 08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경우 조·야간 각 2시간 범위로 한한다.

**제7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및 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신청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 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⑥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용 또는 이용할 때: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 야간에 사용할 때: 해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
- ⑦ 제6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단위 공식적 종목별 대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3. 구 소재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사용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의 노인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3.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14.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구민(구에 거주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3.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4.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된 회원
  5.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7.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②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③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한다.
- ④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는 제외하고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해야 하며, 철거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大執行)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③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7조(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거나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반기별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위탁사무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무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0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손실 및 손해에 대비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21조에 따른 지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손해배상)**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사용료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사용료(제10조 관련)**

○ 이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 중 국제도시 테니스장	1회사용권	1시간/1일/ 1회/1코트	13,000	
	월회원권	2시간/1일/1회	65,000	* 토/공휴일 제외

※ 조명사용료 5,000원(1시간당)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 중 국제도시 테니스장	전체코트 대 관 2시간 당	117,000	* 조명사용료 22,500

1. 상기 사용료(이용, 전용), 조명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운영자가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 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나.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기준 마련으로 제안의 체계적인 관리 체제 확립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제8조제3항)
- 나. 인천광역시 중구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제12조의2)
- 다. 실시성과의 평가 및 관리(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1호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실시평가서 (제23조 관련)**

제안제목				
채택연도		관리번호		
우수등급		부 상 금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제안평가	구 분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효과	금액 또는 개선실적		
<p>「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제23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실시부서의 장 (인)</p> <p>※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p>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제안관리기록부 (제26조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우수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	포상종류		
	부상금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제2쪽)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국고·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실시성과 평가	~			
	~			
	~			

12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p> <p>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가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li> </ol> <p>&lt;신 설&gt;</p> <p>제14조(심사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12조의2(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14조(심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li> <li>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li> <li>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li> <li>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li> <li>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li> <li>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li> </ol> <p>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제안관리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채택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안 의결(2021.4.12.)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소속공무원 중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 중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연수 지원” 삭제  
(제6조제6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2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소속공무원 중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지원</u>	<삭    제>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내 야외공연장 정보를 현행화하여 야외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야외공연장 명칭 및 위치 현행화 (별표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3호

###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야외공연장의 위치 (제2조 관련)

공연장명	위 치	비 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학공연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13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58-1	
월미도 친수공간 갈매기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공연장명	위 치	비고	공연장명	위 치	비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외공연장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13번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학공연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13	
자유공원 야외공연장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번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58-1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인천 중구 향동7가 58-1번지		월미도 천수공간 갈매기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	
영마루공원 야외 공연장	인천 중구 운서동 2709-1번지				
월미도 천수공간 야외공연장	인천 중구 북성동1가 106-8번지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사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지원대상,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제5조)
- 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제6조~제7조)
- 마. 협력체계의 구축(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4호

###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 3. 은둔형 외톨이의 교육 및 취업 지원
  -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
  -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 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5.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自助)모임 지원
  -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제정사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시책의 수립·시행(제3조)

다. 실태조사(제4조)

라. 생활악취 대응 지침(제5조)

마. 지원(제6조)

바. 지도·감독(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5호

###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에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사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기능 및 구성(제3조~제4조)

다. 변경사항 등 보고(제5조)

라. 지원(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6호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정 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제4조제2항 관련)

교섭단체 명칭:

구성연월일:

대표의원

소속 정당	의 원 명	서 명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 원 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제5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 원 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제5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소 속 정 당	의 원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상실”,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함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정사유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제4조)
- 다. 수당 등(제5조)
- 라. 지급제외(제6조)
- 마. 증거서류의 제출(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7호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증거서류의 제출)** 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사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중 소송이 발생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제1조~제3조)
- 나. 소송비용 지원, 환수(제4조~제5조)
-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제6조~제7조)
- 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제8조~제9조)
- 마.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바. 간사(제11조)
- 사. 비밀유지의무(제14조)
- 아. 소송결과 제출(제15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88호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 2. 의회 법률 고문
-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민사·행정 소송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형사소송	검 사		-	
		피고인		변호인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 송 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 판결문 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 사례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소 송 물 가 액  기 준	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	800,000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000,00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00,00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	
		5억원 이상	4,500,000	
		X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	없음	
	다수관련사건	3,000,000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5,000,000		
기 타	1. 인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비		
헌 법 재판소 관 할	1. 일반사건	2,000,000	없음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건	5,000,000		

- ※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 3.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 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구비서류

-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 2. 승소 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 명령서 등)

[별표 2]

###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예 규**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예규

개정사유

- 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신설에 따라 채용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다. 징계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신설에 따른 비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 일원화(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 근로자 채용 절차를 규정한 제4조 내지 제6조를 일괄 삭제
- 나. 공가 사유에 건강검진 추가 및 안전보건 조항 보완(제24조, 제48조)
- 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신설에 따른 징계 관련 조항 구분 (제34조, 제35조, 제38조)
  - 청원경찰 징계 종류를 별도로 규정토록 함(제34조)
  - 청원경찰 징계 관할을 별도로 규정토록 함(제35조)
  - 징계사유의 시효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와 일치화(제38조)
- 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 명시(제62조)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구문 정비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 예규 제108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예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채용기준」”으로, “규칙”을 “규정”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근로자에게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제1항의”를 “근로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공무원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제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제27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경고”를 “경고(훈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의 시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위원에게”를 “위원 및 당사자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중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를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8조제1항 중 “사용자는「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과「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용자는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 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u>규칙</u>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생 략)</p>	<p>제2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 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채용기준」 ----- 규정-----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전형)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적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5조(신체검사) 공무직근로자가 될 사람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사용자”또는“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6조(자격기준 및 가산특전) 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자격기준에 적합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p> <p>1. 응시연령: 18세 이상</p> <p>2. 거주지 제한(공무직근로자만 해당한다): 해당 시험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천 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p> <p>3. 자격요건: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의 종류는 채용계획서에 따로 명시한다.</p> <p>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거주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8조의2에 따른 전환대상자일 경우 채용 및 전환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p>	
<p>제8조(근로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u>구</u> 예산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1. ~ 3. (생략)</p>	<p>제8조(근로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② (생략)</p> <p>③ 인사부서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p>	<p>제8조의2(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 -----.</p>
<p>제17조(근무시간) ①·② (생략)</p> <p>③ 작업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연장은 <u>법 제53조</u>를 준용한다.</p>	<p>제17조(근무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법 제53조 및 제56조</u> -----.</p>
<p>제21조(유급휴일)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제2조에 따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종별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1조(유급휴일) -----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제2조 ----- -----.</p>
<p>제23조(특별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해진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p> <p>1.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 ----- -----.</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제1항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24조(공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간 또는 일수로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한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제27조(휴직자 처우 등) ① (생략)</p> <p>② 사용자는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으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p> <p>③·④ (생략)</p> <p>제34조(징계의 종류 등) ① 근로자의 징계 종류 및 세부절차는 직종별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lt;단서 신설&gt;</p> <p>② (생략)</p> <p>③ 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u>경고</u>해야 한다. 이 경우,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p>	<p>2. ----- 근로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 . 다만, 청원경찰은 공무원 단체협약을 준용한다.</p> <p>제24조(공가)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p> <p>제27조(휴직자 처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징계의 종류 등) ① ----- . 다만,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 등은 별도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경고(훈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제3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u>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u>다만, 청원경찰의 징계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u></p> <p>②·③ (생략)</p> <p>제3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p> <p>제40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① 징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u>위원에게 서면으로</u> 통보해야 한다.</p> <p>2.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5조(해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p> <p>1. <u>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u>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망이 없는 경우(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p> <p>2. ~ 4. (생략)</p> <p>제48조(안전보건관리) ① <u>구청장은 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게시</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u>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u>다만,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은 별도로 정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의 시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준용한다.</p> <p>제40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① ----- ----- .</p> <p>1. ----- ----- ----- <u>위원 및 당사자에게</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5조(해고) ----- ----- .</p> <p>1. <u>건강상의 이유</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8조(안전보건관리) <u>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용한다.</u></p>

현행	개정안
<p><u>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u></li> <li><u>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u></li> <li><u>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li> <li><u>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li> </ol> <p><u>② 각 부서는 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u></p> <p><u>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장 내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u></li> <li><u>2. 항상 작업장을 정리정돈하고 재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u></li> <li><u>3. 안전장치·소화설비·위생설비, 그 밖에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u></li> <li><u>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 장치,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정해진 작업 동작 및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u></li> <li><u>5. 정해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u></li> <li><u>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할 것</u></li> <li><u>7. 사용자 측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전염병 예방접종 등은 반드시 받을 것</u></li> </ol>	

현행	개정안
<p>제5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사용자는 임신한 <u>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u>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p>	<p>제5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 <u>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u>-----          -----          -----.</p>
<p>제56조(육아휴직)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56조(육아휴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8조(남녀 차별의 금지) ① 사용자는「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과「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에게 고용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p>	<p>제58조(남녀 차별의 금지) ① 사용자는 「대한민국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2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p>	<p>제62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준용한다.</p>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56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86(2023.12.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계획과 ☎032-760-7518, 건설과 ☎032-760-74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3. 25.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실시계획 변경 사유**

- 공사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5번지 및 3-5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명칭: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연장(L) = 324m, 면적 = 659m<sup>2</sup>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중구 제1청사)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 초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 수 일: 2022. 9. 21.</li> <li>- 준공예정일: 2024. 3. 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 수 일: 2022. 9. 21.</li> <li>- 준공예정일: 2024. 6. 30.</li> </ul>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5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

허가 번호	허가일	위치	면적(㎡)	목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간
제2021-18호	2024.03.22.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60-4번지 인근 공유수면	325.02㎡	안전교육장 조성(완료) 포내 체험어장 커뮤니티센터 조성(신규)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해양수산과)	2021.9.28. ~ 2036.9.27.

2024년 3월 25일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6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역

승인번호	승인일	공사 내용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2024-2호	2024.3.22.	편의시설 조성공사	인천 중구 용유서로174번길 30-15, A동 3층 303호 (박순옥)	2024.4.1. ~ 2024.4.30.

2024년 3월 25일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2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3. 공고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홍*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154번길 12, 20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9. (15일간)

## 5. 공고사항

-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032-760-7698, FAX.032-760-699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22호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제3항
- 3.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정*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139, 769동 100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폐문부재
2	이*기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로163번길 25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4. 03. 25. ~ 2024. 04. 09. (15일간)

##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30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소유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9.

2. 공고내용

○ 운행정지 차량 내역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사유	비고
1	90로7326	봉고III	2024. 3. 15	소유자요청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2024년 3월 25일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